

---

# 2021년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



# 목 차

## □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b>I. 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개요</b> .....	<b>1</b>
1. 사업목적 .....	1
2. 사업 추진근거 .....	1
3. 용어의 정의 .....	2
4. 추진 체계 및 역할 .....	3
5. 2021년 추진 개요 .....	5
6. 2021년 사업유형별 지원금 .....	6
<b>II. 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안내 (참여기업용)</b> ..	<b>7</b>
1.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요건 .....	7
2. 참여기업과 참여자 간 약정체결 .....	9
3. 참여자 활동조건 및 근무관리 .....	10
<b>III. 보조금 관리 안내</b> .....	<b>13</b>
1. 참여기업 지원금 관리 .....	13
2. 참여기업 부정수급 제재 .....	13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15
<서식모음> .....	16
<부록> 직종분류표 .....	37

□ 2021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	2021																		
용어의 정의 (2p)	○ 사. “중앙운영위원회”라 함은 개발원 및 관계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 계약해지, 부정수급 소명 등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한다.	○ 사. “중앙심의위원회”라 함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해지, 부정수급 소명 등 별도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를 말하며 개발원 및 관계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 계약해지, 부정수급 소명 등을 심의하는 기구																		
사업유형별 지원금 (6p)	○ 사업 내 3개 유형 운영 중 <table border="1" data-bbox="359 712 895 920"> <thead> <tr> <th>유형</th> <th>지원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월37만원*6개월</td> </tr> <tr> <td>세대통합형</td> <td>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td> </tr> <tr> <td>장기취업유지형</td> <td>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td> </tr> </tbody> </table>	유형	지원방식	일반형	월37만원*6개월	세대통합형	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	○ ‘체험형’ 유형 신설 <table border="1" data-bbox="927 712 1460 987"> <thead> <tr> <th>유형</th> <th>지원방식</th> </tr> </thead> <tbody> <tr> <td>일반형</td> <td>월37만원*6개월</td> </tr> <tr> <td>장기취업유지형</td> <td>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td> </tr> <tr> <td>체험형*</td> <td>인턴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td> </tr> <tr> <td>세대통합형</td> <td>6개월 이상 고용 및 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td> </tr> </tbody> </table> <p>* (체험형) 계속고용의사 갖춘 기업만 지원하는 기존 진입장벽을 완화 하되, 전문성·확장성이 높은 우수직종을 중심으로 사업규모화를 지원하는 유형(규모 있는 신규투자, 한국판 뉴딜 일자리 등의 발굴·확대를 위한 개발원 시범사업 추진)          ※ 단, 체험형 사업 참여 종료 후 해당 사업 일반형으로 전환 불가</p>	유형	지원방식	일반형	월37만원*6개월	장기취업유지형	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	체험형*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6개월 이상 고용 및 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
유형	지원방식																			
일반형	월37만원*6개월																			
세대통합형	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																			
유형	지원방식																			
일반형	월37만원*6개월																			
장기취업유지형	18개월 고용유지 후 일시급(90만원)																			
체험형*	인턴기간 최대 3개월 이내 월 37만원 지원																			
세대통합형	6개월 이상 고용 및 급여지급(300만원 이상) 이후 일시급(300만원)																			
위탁운영비 지급기준 (6p)	○ 1인당 30만원	○ 사업량별 차등지급 <사업량별 지원기준> <table border="1" data-bbox="927 1429 1460 1518"> <thead> <tr> <th>구간</th> <th>20~200개</th> <th>201~300개</th> <th>301개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30만/인</td> <td>35만/인</td> <td>40만/인</td> </tr> </tbody> </table> <p>* 단 체험형의 경우 10만원/인 적용</p>	구간	20~200개	201~300개	301개 이상	금액	30만/인	35만/인	40만/인										
구간	20~200개	201~300개	301개 이상																	
금액	30만/인	35만/인	40만/인																	
수행기관 자격요건 (7p)	⑤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⑥ 기업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⑤ 전경련,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지부, 산하단체, 회계·노무법인 ⑥ 기업(직능별) 협회 또는 협동조합,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구분	2020	2021
수행기관 재지정 (7p)	○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계속 추진이 적격한 수행기관은 별도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재지정 가능하다. 이 경우도 위탁운영계약 체결 절차는 준수한다.	○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계속 추진이 적격한 수행기관은 별도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최대 2회에 한해 재지정 가능. 이 경우 위탁운영 계약 체결 절차 준수  * 최초배정량 100% 달성 & 전체 참여자 월평균 보수액 이상 & 계속고용률 100% 충족 수행기관 (10월말 실적 기준)
참여자 교육 (13p)	○ (기타사항) 개발원은 소양·직무교육에 대해서 60+교육센터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참여자 교육 대장(서식19)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에 등록	○ (기타사항) 개발원은 소양·직무·참여자유성* 교육에 대해서 60+교육센터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참여자 교육 대장(서식19)을 작성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에 등록  * 직종별 맞춤형 양성인력 배치 시범 운영 실시
인턴지원금 지원수준 (14p)	○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 참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은 수행기관이 개발원과 협의하여 지원 범위를 결정 가능 (* 가불금액(전차금) 형태의 금액은 급여 불인정)
수행기관 지원금 및 지급관리 (16,18p)	○ 위탁운영비 총액의 50% 범위 내 선지급 가능	○ 위탁운영비 및 인턴지원금 각각 총액의 70% 범위 내 선지급 가능
계속고용자 사후관리 보고 (19p)	○ 계속고용 이후 계속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월1회 방문 또는 유선) 및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간 중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전산에 등록	○ 계속고용 이후 계속고용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월1회 방문 또는 유선) 및 사후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간 중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전산에 등록

구분	2020	2021
확인·점검 (20p)	○ 개발원은 수행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에 의하여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	○ 개발원은 수행기관,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계획에 의하여 비대면 상시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서식14,서식15)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가능(서식14-1,서식15-1)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조치 (21p)	○ 실적이 부진한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익년도 참여 제한·배정인원 축소, 사업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 실적이 부진한 수행기관에 대해서 개발원은 개선계획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개선계획 미이행 시 익년도 참여 제한·배정인원 축소, 사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 가능
세대통합형 (22p)	○ (사업정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자를 청년멘토로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술전수를 지원하는 사업  ○ (참여자 자격기준)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단, 상기 자격 충족자이면서,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자 중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 되는 자도 가능	○ (사업정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만 60세 이상자를 청년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술전수를 지원하는 사업  ○ (참여자 자격기준)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세대통합형의 경우,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기업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제외 조건 예외적용
참여자 참여제외 (26p)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가능(서류제출)

##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사업운영안내 목적) 본 사업 안내는 「2021년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 2. 사업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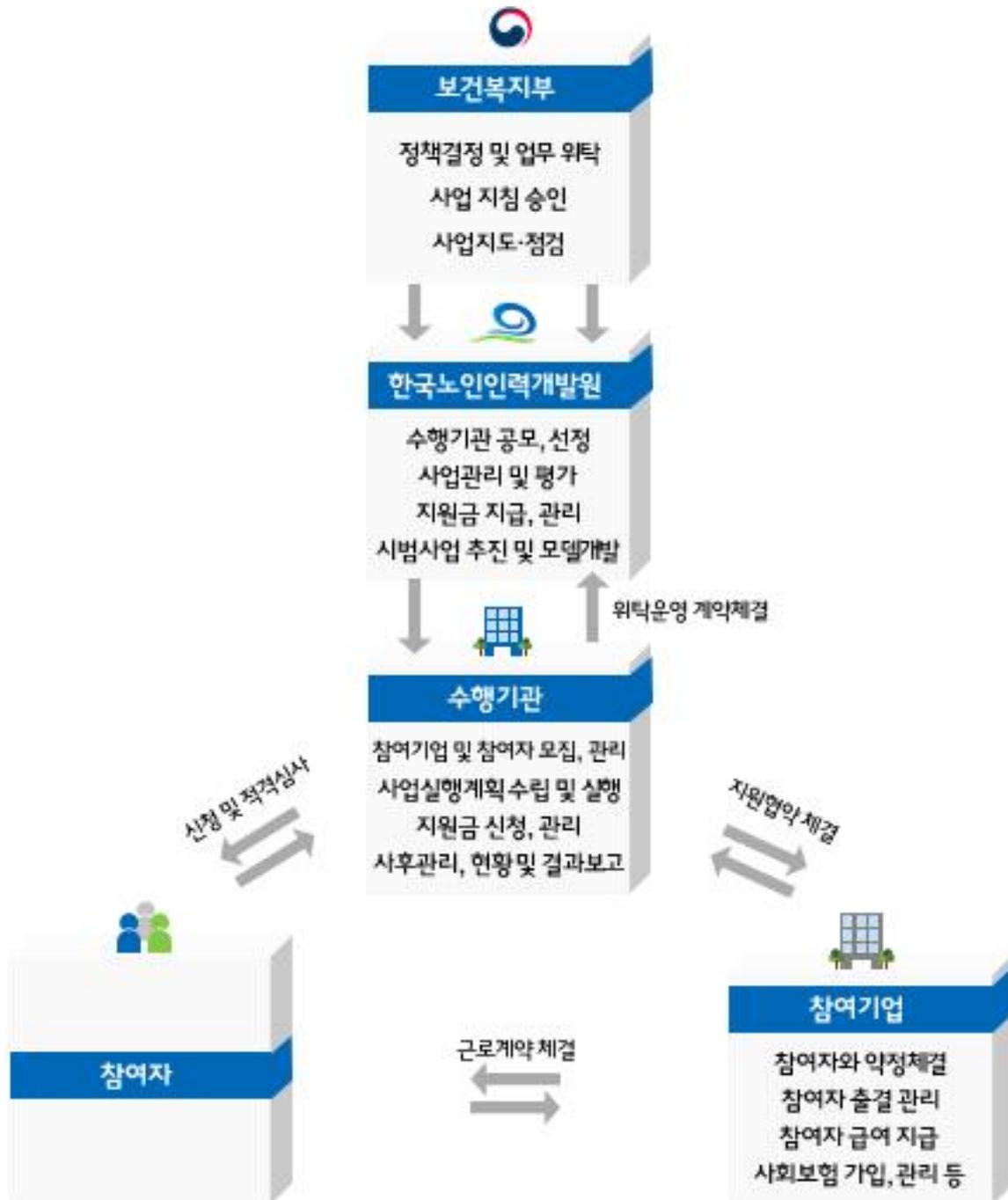
### 3. 용어의 정의

- 가. “시니어인턴십 사업”(이하 “인턴십”)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나. “수행기관”이라 함은 인턴십 및 세대통합형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다. “참여기업”이라 함은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라. “참여자”라 함은 만 60세 이상자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운영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마. “지원금”이라 함은 인턴십 및 세대통합형 사업운영을 위해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지원하는 제반 비용을 말하며,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이상 수행기관),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이상 참여기업)으로 구성
- 바. “중앙심의위원회”라 함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약해지, 부정수급 소명 등 별도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를 말하며 개발원 및 관계 외부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되며, 계약해지, 부정수급 소명 등을 심의하는 기구

#### 4. 추진 체계 및 역할

가. (추진체계) 민간경상보조 100%(복지부→개발원→수행기관→참여기업)

[시니어인턴십 추진체계]



## 나. 운영주체별 역할

### 1) (보건복지부)

- ①정책결정 및 업무위탁 ②사업지침 승인 ③사업 지도·점검

### 2) (개발원 본원)

- ①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②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③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및 지원 ④중앙심의위원회 운영 ⑤사업평가

### 3) (개발원 지역본부)

- ①수행기관 공모 신청접수
- ②참여기업 발굴 및 수행기관 관리·지원
- ③사업실행계획서 접수 및 승인 ④사업수행에 대한 확인·점검
- ⑤지원금 교부·관리 ⑥시범사업 추진 및 모델 개발

### 4) (수행기관)

- ①참여기업 발굴·협약 및 참여자 모집·관리
- ②사업실행계획서 수립 및 시행
- ③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 ④지원금 교부신청·지급 및 관리
- ⑤참여기업에 대한 계속고용 및 신규채용 유도
- ⑥참여기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현황 및 결과 보고

### 5) (참여기업)

- ①참여자와 약정체결 ②참여자 출결 관리
- ③참여자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관리
- ④근로자 보호 및 산업안전관리 시행

## 5. 2021년 추진개요

- (사업목적) 만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 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 (사업정의)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 (추진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 (추진체계) 민간경상보조 100%(복지부→개발원→수행기관\*→참여기업)
  - \* 참여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관리 등 시니어인턴십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
- (참여대상) 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이상 (1961년생 및 이전출생자)
- (사업인원) 38,000명
- (사업예산) 84,360백만원
- (사업기간) 2021. 1. ~ 12.(12개월)
- (지원유형)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체험형
- (지원내용)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이상 기업 지원금), 위탁운영비, 채용성공보수(이상 수행기관지원금)

## 6. 2021년 사업유형별 지원금

### < 참여기업 지원내용 >

구분	지원내용	
일반형	<b>【1인당 최대 222만 원 지원】</b>	
	인턴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li> <li>※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li> </ul>
	채용지원금	<p style="text-align: center;"><b>&lt;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li> <li>※ 월 최대 37만 원 한도 내, 최대 3개월</li> </ul>
(일반형 확장) 장기취업 유지형	<b>【1인당 총 90만 원 지원】</b>	
	장기취업 유지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형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당 총 90만 원 지원(일시금)</li> <li>※ 지원기준일(18개월 경과 시점) 이후 1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li> </ul>

## 1. 참여기업 및 참여자 자격요건

### 가. 참여기업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

※ 단,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시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 ▶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 ▶ 임금채불사업장
-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 단,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 ▶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 나. 참여자

- 만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참여 제외

-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 예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 참여한 취업자 등
-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 당해년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 ▶ 인턴십 참여 시작일 또는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자
  - \*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제외
  - \*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관계 파악(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 후 참여 가능
- ▶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
- ▶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 \*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
- ▶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인척(사위-처부모, 며느리-시부모), 직계존비속, 혈족(형제·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
- ▶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보유기준)
  -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가 소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 참여 가능(서류제출)

## 2. 참여기업과 참여자 간 약정체결

### 가. 인턴십 약정(근로계약) 체결

- (약정체결)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인턴십 약정」을 체결(서식10)
  - 기업에서 장기 고용 계약체결을 희망할 경우, 표준 또는 자체 근로계약서 내 인턴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여 인턴십 약정서 작성을 생략 가능
  - 이때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약정서로 보며, 근로계약서는 인턴십 약정서의 내용을 준수
- (약정체결의 변경) 참여기업은 참여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 지원금 신청 전까지 수행기관에 제출
  - 약정 변경으로 지원금이 과지급 된 경우 회수 가능

### 나. 참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험적용

- 인턴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3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 인정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최초 지원금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전체이력)를 수행기관에 반드시 제출
    - ※ 참여자 사고 발생 시 개발원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산재처리 여부 등은 업무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관리 필수
    -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2항)

### 3. 참여자 활동조건 및 근무관리

#### 가. 활동조건

- (약정급여)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하며 약정서에 임금의 종류, 금액, 산출내역 등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에 자율적 조율
- (약정기간)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최소 1개월 이상)
- (업무상 재해 인정) 근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은 약정기간 범위 내에서 근무
  -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 기간이 1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약정은 자동 해지
- (근무 및 활동시간 등) 근무시간은 당해 기업의 통상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
  -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일자 및 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약정서에 명시
- (약정의 효력 및 보충) 약정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약정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나. 근무 관리

- (근무 및 활동 관리)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과거 경력 또는 희망 등을 고려하여 적정업무를 부여하고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 및 활동 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양식은 사업장 자체양식으로 대체 가능(서식11)
- (급여 및 수당 지급) 참여기업은 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자와 체결한 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참여자 계좌로 지급
  - ※ 금융거래가 불가할 경우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지급 확인서(서식 12) 지급
- (전담자 지정) 참여기업은 행정업무 지원 및 참여자의 원활한 적응 지원을 위하여 인턴십 운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
- (약정 해지) 참여기업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자가 사전 협의 없이 3회 이상 결근, 약정내용 불이행 등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질병·개인적인 사정 등 사업참여가 어려울 시 약정 해지 가능
  - 참여자가 참여 기간 도중에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약정은 자동 해지
  - 참여기업은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총 3회를 초과할 경우 약정 해지 가능

## 다. 중도해지자 관리

- (중도해지 방지 및 제한)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참여자에게 약정 내용, 업무 내용 등을 충분히 안내하여 중도탈락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참여기업 및 참여자가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제시
- (중도해지자의 재참여) 인턴 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잔여 기간 동안 재참여를 허용하되 다음의 규정 준용
  - 참여자가 참여 월 중 중도해지된 경우, 참여 기간이 14일(휴일 포함) 이내이면 개월 수를 새로 산정하고, 14일을 초과한 경우 잔여일만 인정

### 중도해지 시 참여 가능 기간

- ▶ 14일 이내일 경우 개월 수를 새로 산정, 14일을 초과한 경우 잔여일만 인정
  -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3개월
  -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2개월 15일
  - 1개월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2개월
  - 1개월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개월 15일
  - 2개월 14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개월
  - 2개월 15일 참여 후 중도해지 : 잔여기간 15일

- (중도해지자 통보 및 지원금 계산) 참여기업은 참여자가 중도에 퇴사 또는 약정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10일 이내에 수행기관에 통보
  - 중도해지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참여기업이 지급한 월 급여의 50%로 월 37만 원 한도로 지급
- (결원 보충) 참여기업은 참여자의 귀책 사유로 중도 퇴사한 경우 수행기관에 대체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대체 충원된 참여자의 지원 기간은 새로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 Ⅲ 보조금 관리 안내

#### 1. 참여기업 지원금 관리

- (참여기업의 반납의무) 참여기업은 사업 안내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 반환
- (반환금 회수절차) 수행기관은 지원금 회수 대상 기업에 반환 결정을 통지(반환 사유, 반환금액, 대상자 등 포함)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
  - 정해진 기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시행

#### 2. 참여기업 부정수급 제재

##### 가. 부정 수급의 개념

- “부정 수급”이란 참여기업 또는 수행기관 등이 인턴지원금, 채용 지원금, 위탁운영비 등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은 것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참고)

- ▶ (제40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수령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제41조)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나. 부정 수급 판단기준

- (수행기관) 교부받은 위탁사업비 및 지원금을 고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허위, 기타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사용한 경우
- (참여기업) 고의 또는 본 안내, 협약 및 약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경우

### 참여기업 부정 수급

#### 유형(예시)

- ▶ 인턴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자를 90일 이내에 인턴십으로 재참여(단,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는 제외)
-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십 참여자로 등재
- ▶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 등
- ▶ 계속고용 이후 6개월 이내에 참여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

## 다.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 (참여기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 수급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그 부정 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를 금지하며,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인턴십 참여 금지
  - ※ ①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업실행계획 시작일로부터, ②지원금 지급 후 발견 시 부정 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 부정신청 또는 수급에 따른 인턴십 참여 금지 기간 도중에 신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채용한 참여자에게 기지급된 지원금 반납·환수
- (부정 수급 조사 협조의 의무) 수행기관 및 참여기업이 개발원의 부정 수급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지원금 지원 중단 및 추가 인턴십 참여 제한

##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 기업의 위반행위

판단 구분	판단기준	위반사항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경미한 지침 위반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증빙 및 부속서류 미비 등 ◦ 비치문서 관리 소홀(미작성, 서식 부적정 등) ◦ 운영안내, 협약 등 위반
경고	◦ 행정 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지침 위반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 주의를 통해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 주의 조치 시정 불이행
협약 해지	◦ 지침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행위로 개선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곤란한 사항	◦ 기존직원 퇴직 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사업참여 ◦ 참여자,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 인턴십 신청 및 지원금 서류 허위 제출 ◦ 경고 조치 시정 불이행

- ※ 위반행위별 시정지시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봄
- ※ 위반행위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시 다음 연도 사업참여 제한
- ※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지원 중단. 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

## 「시니어인턴십」 서식 목록

[서식 5] 시니어인턴십 참여기업 신청서 .....	17
[서식 6] 인턴십 지원 협약서 .....	18
[서식 8] 인턴십 참여신청서(참여자용) .....	21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2
[서식 10] 인턴십 약정서 .....	23
[서식 11] 인턴십 출근부 .....	24
[서식 12]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	25
[서식 13] 지원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	26
지원금 신청 인원별 산출내역 .....	27
[서식 14] 비대면 참여기업 운영실태 자체점검표 .....	28
[서식 14-1] 참여기업 운영실태 현장점검표 .....	31
[서식 20]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	34



## 인턴십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수행기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시니어인턴십」(이하 “인턴십”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정부지원금 지급)**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을”에 대한 정부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단,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계속고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 “갑”은 인턴십 운영안내에 따라 “을”이 채용한 참여자의 근무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근무조건)** 근무 장소(비대면 업무의 경우 개발원과 협의하여 외근 및 재택근무 가능), 업무 내용,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은 참여자와 체결한 「인턴십 약정서」에 따른다.

**제4조(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의 비치)** “을”은 시니어 인턴십 참여신청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그 운영계획 내용을 참여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제5조(참여기업의 협력 의무)** “갑”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안내에 의거하여 “을”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점검을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운영상황의 통보)** “을”은 사업 운영실적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갑”의 실적과약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갑”은 매월 “을”이 약정에 따라 인턴에게 지급한 월 급여의 50%(최고 월 37만 원, 체험형의 경우 월 급여와 무관하게 월 37만 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인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갑”은 “을”이 약정종료 후 당해연도 계속근로계약(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 지급절차에 따라 3개월간 근로계약에 명시된 월급여액의 50%(최고 월 37만 원)를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③ “갑”은 “을”과 참여자 사이에 약정이 해지되거나, 참여자가 중도에 근무를 포기한 경우 “을”이 지급한 임금의 50%(최고 월 37만 원, 체험형의 경우 월 급여와 무관하게 월 37만 원)를 지급한다. (단,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세대통합형은 제외)

④ “을”은 매월 급여일에 참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에 출근부, 참여자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계좌이체 관련 자료, 입금통장 사본, 고용 보험피보험자격 이력명세서(피보험자용) (최초 1회 시에 한함)를 첨부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을”은 참여자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 「인턴십 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우선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제재)** ① “갑”은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을”이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이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참여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전에 채용하거나, 채용일 전 90일 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등 운영안내에 위반하여 참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갑”은 “을”이 약정한 기간 만료 전 또는 계속고용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턴십 약정」 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때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추후 3년간 인턴십 참여를 배제한다.

⑥ “을”이 운영안내 및 약정을 위반한 경우 “갑”은 운영안내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 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정부지원금의 반환·상계)** ① “을”이 운영안내 및 이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개발원 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갑”이 정부지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을 상계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중도 포기 등 통보)** “을”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참여자가 중도 포기하거나, 중도에 약정을 변경 또는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계속고용)** ① “을”은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의 운영계획 내용 중 계속고용 계획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인턴을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안내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첨부한 채용자 명단을 수행기관에 제출하고





##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기간
필수정보	성명, 전화번호(주택, 휴대폰), 만 나이, 주소, 참여자격 제한 사유	시니어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위한 참여자 선발, 관리 및 사업운영지원, 지원자 사후 관리(민간취업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 서류 5년</li> <li>•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5년</li> </ul>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과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합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필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목	수집목적	보유 기간
선택정보	세대구성형태, 최종학력, 경력 사항, 신청 동기, 희망 직종명, 희망보수, 희망 근로형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 서류 5년</li> <li>•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5년</li> </ul>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선택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 기간
건강상태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서 및 관련 서류 5년</li> <li>• 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셋 5년</li> </ul>

※ 위의 민감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니어인턴십 참여자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선택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 보건복지부 장관(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귀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부정 수급 방지 등)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합니다.	
<b>고용정보원</b>	참여자 선발 :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여부 참여자 관리 :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여부 변동



## 인턴십 출근부

기업명 :					약정기간 : - (1개월)				
참여자성명 :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월 일	출근	결근	확 인	
			참여자	담당자				참여자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활동 결과	출근 결근				일 일	담당자 :			

※ 작성요령 : 출근 시 확인란 참여자 서명, 담당자 확인, 지각 조퇴 시에는 근무시간 명시, 결근은 / 표시  
 ※ 기업 자체 출근카드(전자식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 보수 현금지급 확인서

- 사업장명 :
- 성 명 :
- 연 락 처 :
- 주 소 :

상기 본인은 \_\_\_\_\_ 년 \_\_\_\_\_ 월분  
급여 \_\_\_\_\_ 원을 (수령이유)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참여자 \_\_\_\_\_ (인 또는 서명)

※ 보수현금 지급확인서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자필서명 확인



[별지] 지원금 신청 인원별 산출내역

연번	참여자 정보			신청정보				
	성명	생년 월일	직종	신청 지원금	인턴 기간 또는 계속고용 계약 기간	신청 회차	급여 지급액 (세전, 원)	신청 금액 (원)
신청금액 합계						인턴지원금 채용지원금		
1	홍길동	590101	주유원	인턴	21.00.00	1	1,500,000	370,000
				지원금	~20.00.00	2	1,500,000	370,000
				채용	21.00.00	3	1,500,000	370,000
				지원금	~20.00.00	1	1,500,000	370,000
				지원금	~20.00.00	2	1,500,000	370,000
				지원금	~20.00.00	3	1,500,000	370,000
2				인턴	21.00.00	1		
				지원금	~20.00.00	2		
				채용	21.00.00	3		
				지원금	~20.00.00	1		
				지원금	~20.00.00	2		
				지원금	~20.00.00	3		
3				인턴	21.00.00	1		
				지원금	~20.00.00	2		
				채용	21.00.00	3		
				지원금	~20.00.00	1		
				지원금	~20.00.00	2		
				지원금	~20.00.00	3		
4				인턴	21.00.00	1		
				지원금	~20.00.00	2		
				채용	21.00.00	3		
				지원금	~20.00.00	1		
				지원금	~20.00.00	2		
				지원금	~20.00.00	3		
5				인턴	21.00.00	1		
				지원금	~20.00.00	2		
				채용	21.00.00	3		
				지원금	~20.00.00	1		
				지원금	~20.00.00	2		
				지원금	~20.00.00	3		

※ 유의사항 : 직종분류표(수행기관 문의)를 참고하여 직종을 작성, 지원금 작성 시 월급여액의 50%(월 최대 37만 원) 지급

※ 신청 회차는 필요 시 추가 가능(그 외 양식 수정 불가)

## 비대면 참여기업 운영실태 자체점검표

기본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운영 현황	[책임자] 직위 :                      성명 : [부서명] [참여인원]                      명		

운영 현황

계획인원 (A)	실시인원(명)					진척률(% (B/A)×100
	계 (B=C+D+E)	참여중 (C)	중도포기 (D)	참여완료 (E)	계속고용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점검결과	점검의견
사업 운영	책임자 지정 및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소양 교육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운영계획의 이행 - 참여자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 부서 배치 여부 - 과정·일정·내용의 이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출결 관리	출결 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담당자의 출결 관리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인턴십 협약서 이행 실태	근무 장소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급여의 적기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중도 포기자 관리	중도포기 인원	명	
	중도포기 사유 (참여자 개인별 사유 기재)		
서류 보존 상태	약정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회계서류(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등		
기 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참여기업 위반행위 및 부정 수급에 대한 제재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자체 점검 항목에 대하여 부정으로 작성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검 담당자(수행기관)**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참여기업 운영실태 현장점검표

기본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운영 현황	[책임자] 직위 :                      성명 : [부서명] [참여인원]                      명		

운영 현황

계획인원 (A)	실시인원(명)					진척률(%) (B/A)×100
	계 (B=C+D+E)	참여중 (C)	중도포기 (D)	참여완료 (E)	계속고용	

□ 주요 점검내용

구분		점검결과	점검의견
사업 운영	책임자 지정 및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오리엔테이션 및 직무·소양 교육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운영계획의 이행 - 참여자의 적성 등을 고려한 관련 부서 배치 여부 - 과정·일정·내용의 이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출결 관리	출결 상황 관리의 적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담당자의 출결 관리 확인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인턴십 협약서 이행 실태	근무 장소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근무시간 적정 관리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급여의 적기 지급 여부	<input type="checkbox"/> 적정 <input type="checkbox"/> 부적정	
	근무내용의 변경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중도 포기자 관리	중도포기 인원	명	
	중도포기 사유 (참여자 개인별 사유 기재)		
서류 보존 상태	약정서, 시니어인턴십 참여신청서, 회계서류(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 관련 서류) 등		
기타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

점검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점검 참여자(기업)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점검 담당자(수행기관)

기관명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지급신청서(참여기업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재지		사업자 번호	
주요 사업		상시근로자수	
담당자		연락처	

총 참여인원 (채용직종)	명 ( )		신청총액	(총 참여인원×90만 원) 원
은행명·예금주			계좌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계약기준 월 임금	최초고용일~18개월 경과 시점
				근로계약시작일(추가)~ 6개월 경과 시점
				2019년 월 일 ~ 2021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와 같이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은 지정계좌로  
전액 반납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또는 서명)

○○○ 수행기관장 귀하

**【구비서류】**

1. 장기취업 유지자 근로계약서 사본
2. 참여자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18개월 경과 시점 이후에 발급된 내역서)
3. 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은행 계좌 통장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최초고용일부터 18개월 경과시점이 확인가능한 사회보험 가입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 서 약 서

시니어인턴십 사업이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며, 만약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향후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기업)은 시니어인턴십 사업(장기취업유지형) 신청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 1) 제반 현황자료가 신청일 현재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됨.
  - 2)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아니함.
  - 3) 신청서에 작성된 장기취업 유지자는 중앙정부 등 타 사업 중복지원(일자리안정자금 등)이 불가함
2. 본 기관(기업)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되는 자료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협조한다.
3. 본 기관(기업)은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시니어인턴십 사업운영안내('21년)에 따라 소기의 성과(목적)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기업(기관)명 :

(인)

○○○ 수행기관장 귀하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18)**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0	경영·사무·금융·보험직	01	관리직 (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제외
						0112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21	정부행정 관리자	
						0122	경영지원 관리자	
						0123	마케팅·광고·홍보 관리자	
						0124	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31	연구 관리자	
						0132	교육 관리자	
						0133	법률·경찰·소방·교통 관리자	제외
						0134	보건·의료 관리자	
						0135	사회복지 관리자	
						0136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0137	정보통신 관리자	
				0139	부동산·조사·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41	미용·여행·숙박·스포츠 관리자	
		0142	음식서비스 관리자					
		0143	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51	영업·판매 관리자			
				0152	운송 관리자			
				0159	기타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0161	건설·채굴 관리자			
				0162	전기·가스·수도 관리자			
				0163	제조·생산 관리자			
				0169	기타 건설·전기 및 제조 관리자			
		02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10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21	경영·진단 전문가	
0222	인사·노무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31	회계사			
				0232	세무사			
				0233	관세사			
				0234	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	0241	광고·홍보 전문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42	조사 전문가				
					0243	상품 기획자				
					0244	행사 기획자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51	조세행정 사무원			
						0252	관세행정 사무원			
						0253	병무행정 사무원			
						0254	국가·지방행정 사무원			
						0255	공공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61	기획·마케팅 사무원			
						0262	인사·교육·훈련 사무원			
						0263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0264	감사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71	회계 사무원			
						0272	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 품질 사무원	0281	무역 사무원			
						0282	운송 사무원			
						0283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0284	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 통계·비서·사무 보조 및 기타 사무원	0291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0292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0293	통계사무원			
						0294	비서			
						0295	전산자료 입력원 및 사무 보조원			
						0299	기타 사무원			
				03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11	투자·신용 분석가	
								0312	자산 운용가	
								0313	보험·금융상품 개발자	
								0314	증권·외환 딜러	
								0315	손해사정사	
								0319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21	은행 사무원	
								0322	증권 사무원	
								0323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0324	출납창구 사무원	
								0325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0329	기타 금융 사무원	
								0331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및	
								0332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1101	투자 권유 대행인 인문과학 연구원			
						1102	사회과학 연구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11	자연과학 연구원			
						1212	자연과학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1	생명과학 연구원	
								1222	생명과학 시험원	
								1223	농림어업 시험원	
								131	컴퓨터하드웨어 ·통신공학 기술자	1311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12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20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1333	웹 개발자			
						1339	기타 컴퓨터 전문가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41	데이터 전문가	
								1342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1343	전분시스템 운영자					
				1344	웹 운영자					
				1349	기타 데이터 및 네트워크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50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360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01	건축가	
								1402	건축공학 기술자	
								1403	토목공학 기술자	
								1404	조경 기술자	
								1405	도시·교통 전문가	
		1406	측량·지리정보 전문가							
		1407	건설자재 시험원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11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2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13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1521	금속·재료공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기술자 및 시험원		기술자 및 연구원					
						1522	금속·재료공학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1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2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33	전기·전자공학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1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42	화학공학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1	가스·에너지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2	가스·에너지공학 시험원					
						1553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54	환경공학시험원					
						1555	보건위생·환경 검사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1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62	섬유공학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1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72	식품공학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 안전·비파괴 기술자	1581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1582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583	소방공학시험원					
						1584	산업 안전원 및 위험 관리원					
						1585	비파괴 검사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91	제도사					
						1599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업·군인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11	대학 교수	제외
										2112	대학 시간강사	제외
								212	학교 교사	2121	중고등학교 교사	제외
										2122	초등학교 교사	제외
2123	특수교육 교사	제외										
2129	기타 교사											
2130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41	문리·어학 강사									
		2142	컴퓨터 강사									
		2143	기술·기능계 강사									
		2144	예능 강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3	보건·의료직	30	보건·의료직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2145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2149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215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제외		
						2152	대학 교육 조교(연구 조교 포함)			
						2153	교사보조 및 보육보조 서비스 종사원			
				22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11	판사 및 검사	
								2212	변호사	
								2213	법무사 및 집행관	
								2214	변리사	
								2219	기타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2220	법률 사무원			
				23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11	사회복지사	
								2312	상담 전문가	
								2313	청소년 지도사	
								2314	직업상담사	
		2315	시민단체 활동가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21	보육교사			
						2329	기타 사회복지 종사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331	성직자	제외		
				2339	기타 종교 종사원	제외				
		24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및 소방관 및 교도관	2401	경찰관 및 수사관	제외		
						2402	소방관	제외		
						2403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제외		
		25	군인	250	군인	2501	영관급 이상 장교	제외		
						2502	위관급장교	제외		
						2503	부사관	제외		
						2509	기타 군인	제외		
		30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11	전문 의사			
						3012	일반 의사			
						3013	한의사			
						3014	치과 의사			
				302	수의사	3020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30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40	간호사					
305	영양사			3050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61	임상병리사					
		3062	방사선사							
		3063	치과기공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307		3064	치과위생사					
						3065	물리 및 작업 치료사					
						3066	임상심리사					
						3067	재활공학 기사					
						3069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3071	응급구조사					
						3072	위생사					
						3073	안경사					
						3074	의무기록사					
				3075	간호조무사							
				3076	안마사							
				3079	기타 보건·의료 종사원							
				4	예술·디자인· 방송·스포츠직	41	예술·디자인· 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11	작가	
										4112	번역가 및 통역가	
										4113	출판물 전문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20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 기록물관리사	4131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4132	사서 및 기록물 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41	화가 및 조각가			
								4142	사진작가 및 사진사			
								4143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4144	국악인 및 전통 예술인			
								4145	지휘자, 작곡가 및 연주가			
								4146	가수 및 성악가			
								4147	무용가 및 안무가			
								4149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415	디자이너							4151	제품 디자이너			
				4152	패션 디자이너							
				4153	실내장식 디자이너							
				4154	시각 디자이너							
				4155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61	감독 및 기술감독							
				4162	배우 및 모델							
				4163	아나운서 및 리포터							
				4164	촬영 기사							
				4165	음향·녹음 기사							
				4166	영상·녹화·편집 기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5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직	42	스포츠·레크 리에이션직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4167	조명·영상 기사	
						4169	기타 연극·영화·방송 종사원	
						4171	공연·영화 및 음반 기획자	
				4172	연예인매니저 및 스포츠매니저			
				4201	스포츠 감독 및 코치			
				4202	직업 운동선수			
				4203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4204	스포츠강사,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			
				4209	기타 스포츠 및 여가서비스 종사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11
		5112	미용사					
		5113	피부 및 체형 관리사					
		5114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5115	반려동물 미용 및 관리 종사원					
		5119	기타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5121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5122	혼례 종사원	
						5123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5124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5129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원			
52	여행·숙박·오 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11	여행상품 개발자			
				5212	여행 사무원			
				5213	여행 안내원 및 해설사			
		522	항공기·선박·열 차 객실승무원	5221	항공기 객실승무원			
				5222	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30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5240	오락시설 서비스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11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5312	한식 조리사	
						5313	중식 조리사	
						5314	양식 조리사	
						5315	일식 조리사	
						5316	바텐더	
						5317	음료조리사	
						5319	기타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5321	패스트푸드 준비원	
						5322	홀서빙원	
						5323	주방 보조원	
						5324	음식 배달원	
						5329	기타 음식 서비스 종사원	
				54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11
		5412	청원경찰					제외
		5413	시설·특수 경비원					제외
		5419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제외
		542	경비원	5420	경비원 (건물 관리원)	제외		
		55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5501	요양 보호사 및 간병인	제외
						5502	육아 도우미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11	청소원	제외
						5612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제외
						5613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제외
						5614	구두 미화원	제외
						5615	세탁원 (다림질원)	제외
						5616	가사 도우미	제외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5621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5622	자동판매기 관리원	
						5623	주차 관리·안내원	
						5624	검표원	
						5629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원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61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10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21	기술 영업원	
		6122	해외 영업원					
		6123	자동차 영업원					
		6124	제품·광고 영업원					
		6125	상품 중개인 및 경매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6129	기타 기술 영업·중개 종사원							
						613	텔레마케터	6130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40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615	판매 종사자	6151	상점 판매원					
								6152	통신 기기·서비스 판매원					
								6153	온라인 판매원					
								6154	상품 대여원					
								6155	노점 및 이동 판매원					
								6156	방문 판매원					
						616	매장 계산원 및 대표원	6157	주유원 (가스충전원)					
								6161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6162	대표원 및 복권 판매원					
								6171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62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179	기타 판매 단순 종사원			
										6211	항공기 조종사			
										6212	선장, 항해사 및 도선사			
										6213	철도·전동차 기관사			
				6214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19	기타 철도운송 종사원					
								6221	택시 운전원					
								6222	버스 운전원					
								6223	화물차·특수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 호이스트·지게차)			6229	기타 자동차 운전원					
								6230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 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6241	택배원					
								6242	우편물 집배원	제외				
								6243	선박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선박객실 승무원 제외)					
								6244	하역·적재 종사원					
								6249	기타 배달원					
				7	건설·채굴직			70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11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7012	경량철골공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701		7013	철근공					
						7014	콘크리트공					
						7015	건축 석공					
						7016	건축 목공					
						7017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019	기타 건설 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21	미장공					
						7022	방수공					
						7023	단열공					
						7024	바닥재 시공원					
						7025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7026	건축 도장공					
						7027	새시 조립·설치원					
						7029	기타 건축 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31	건설 배관공					
						7032	공업 배관공					
						7039	기타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40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 (채굴포함)	7051	광원, 채석원 및 석채 절단원					
						7052	철로설치·보수원					
						7059	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7060	건설·채굴 단순 종사원					
				8	설치·정비· 생산직	81	기계 설치·정비· 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8111	공업기계 설치·정비원	
										8112	승강기 설치·정비원	
										8113	물품이동장비 설치·정비원	
										8114	냉동·냉장·공조기 설치·정비원	
8115	보일러 설치·정비원											
8116	건설·광업 기계 설치·정비원											
8119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21	항공기 정비원									
		8122	선박 정비원									
		8123	철도기관차·전동차 정비원									
		8124	자동차 정비원									
		8129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31	금형원			
						8132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40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 산업용로봇 조작원	8150	자동조립라인·산업 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61	일반기계 조립원			
						8162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17	운송장비 조립원	8171	자동차 조립원			
						8172	자동차 부품 조립원			
						8173	운송장비 조립원			
				82	금속·재료 설치·정비·생 산직(판금·단조· 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11	금속가공 제어장치 조작원	
								8212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21	판금원	
								8222	판금기조작원	
								8223	제관원	
								8224	제관기조작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31			단조원				
			8232			단조기조작원				
			8233			주조원				
	824	용접원	8234			주조기조작원				
			8241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42			용접기조작원				
			8251			도장원(도장기조작 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52	도금·금속분무기 조작원						
			8261	유리·유리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2	점토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3	시멘트·광물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4	광석·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269	기타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 산직	831	전기공	8311	산업 전기공					
				8312	내선 전기공					
				8313	외선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21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8322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8329	기타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30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40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51	전기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52	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360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11	컴퓨터 설치·수리원			
						8412	이동전화기 수리원			
						8419	기타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1	방송장비 설치·수리원			
						8422	통신장비 설치·수리원			
						8423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수리원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11	석유·천연가스 제조 제어장치 조작원			
						8512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19	기타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21	타이어·고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522	플라스틱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523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고무·플라스틱 제외)			
						8524	고무·플라스틱 제품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8531	상·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8532	재활용 처리장치·소각로 조작원			
		86	섬유·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11	섬유 제조기계 조작원			
						8612	직조기·편직기 조작원			
						8613	표백·염색기 조작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21	패턴사			
						8622	재단사			
						8623	재봉사			
						8629	기타 섬유·가죽 기능원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31	한복 제조원			
						8632	양장·양복 제조원			
						8633	모피·가죽의복 제조원			
						8634	의복·가죽·모피 수선원			
						8639	기타 의복 제조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8641	제화원			
						8642	신발 제조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8643	세탁 기계 조작용			
		8649	기타 직물·신발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87	식품 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11	제과·제빵원			
						8712	떡 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21	정육원 및 도축원			
						8722	김치·밀반찬 제조 종사원			
						8723	식품·담배 등급원			
						8729	기타 식품 가공 종사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	8731	육류·어패류·농산물 가공기계 조작용			
						8732	제분·도정 기계 조작용			
						8733	곡물 가공제품 기계 조작용			
						8734	과실·채소 기계 조작용			
						8735	음료 제조기계 조작용			
						8739	기타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 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 현상기 조작용	8811	인쇄기계 조작용	
								8812	사진 인화·현상기 조작용(사진수정 포함)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용	8821	목재 가공기계 조작용	
		8822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용							
		8823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829	기타 목재·종이 기계 조작용							
		883	가구·목제품			8831	가구 제조수리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공통 제외 직종				
					제조·수리원	8832	가구 조립원					
						8833	목제품 제조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41	공예원				
							8842	귀금속·보석 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8851	악기 제조원 및 조율사				
							8852	간판 제작·설치원				
				8853			유리기능 복사, 수제 제본 등 기타 기능 종사원					
				8859			주입·포장·상표부 착기 및 기타 기계 조작용					
				89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8900	제조 단순 종사원			
				9	농림어업직	90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11	곡식작물 재배원	
										9012	채소·특용작물 재배원	
										9013	과수작물 재배원	
										9014	원예작물 재배원	
9015	조경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21	낙농 종사원									
		9022	가축 사육 종사원									
		9029	기타 사육 종사원									
903	임업 종사자	9031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9039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종사원									
904	어업 종사자	9041	양식원									
		9042	어부 및 해녀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9050	농림어업 단순 종사원									
10항목		35항목						136항목		450항목		